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5일, 양부남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8. 27.)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9. 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양부남의원)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경제적·정치적 이익’ 및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조작’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

에 앞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란, 폭동, 테러는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조장하는 정보는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내란 등 조장정보를 별도로 불법정보에 추가할 실익이 낮을 수 있음.
- 현행법 및 다른 불법정보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내란 등 조장 정보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지급정지 제도는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며, 일명 ‘통장협박’ 사례와 같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경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두 건에 불과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범죄행위의 중대성,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규모, 범죄 수익 은닉의 위험성 및 추적의 어려움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및 다른 불법정보의 경우와 비교하여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